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요〉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962호, 제2212963호, 제2212964호)

2025. 11.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신장식 · 김재원 · 강경숙 · 김준형 · 최혁진 · 서왕진
김선민 · 이해민 · 차규근 · 황운하 · 윤종오 의원(11인)
 - 2) 제 안 일 : 2025. 9. 15.
 - 3) 회 부 일 : 2025. 9. 16.
- ※ 의안번호 : 1296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김재원 · 강경숙 · 김준형 · 서왕진 · 김선민

이해민 · 차규근 · 황운하 · 윤종오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 의안번호 : 1296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김재원 · 강경숙 · 김준형 · 서왕진 · 김선민
이해민 · 차규근 · 황운하 · 윤종오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 의안번호 : 1296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

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u>	⑤ ----- <u>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u> -----.
⑥ ~ ⑧ (생략)	<후단 삭제> ⑥ ~ ⑧ (현행과 같음)

[표-2]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u>금융위원회 위원장</u> ·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③ ----- ----- ----- ----- ----- ----- <u>금융위원회 위원장</u> ----- ----- ----- -----

현행	개정안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표-3] 국회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둔다. 1.·2. (생략) <u><신설></u>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u>금융위원회 위원장</u>,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3. (생략) ③ ~ ⑥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법률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u>임명동의안</u>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u>금융위원회 위원장</u>----- ----- ----- ----- ----- -----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4]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 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 원장, <u>국가인권위원장</u>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 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 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단체·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표-5] 국가인권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향상
직무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의견표명 ◦ 인권 관련 단체·개인·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및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 인권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1인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장 선출	◦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선출 또는 대통령 지명을 통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장관급²⁾)으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³⁾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향상 업무 수행 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동 기관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동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동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및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견제의 필요성 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직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015

4)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